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Based Judgment Method and System Comprising Automatic Adjustment and Evolution of Judgment Structure}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공지능 기반 판단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매핑하여 판단을 수행하는 판단 구조를 전제로 하여, 판단 이력과 검증 결과에 따라 판단 구조 자체를 자동으로 조정 및 진화시키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판단 시스템은 규칙 기반 또는 고정된 판단 구조에 따라 판단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판단 구조 내에서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일정한 판단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판단 구조 자체를 상황 변화나 누적된 판단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출원인의 출원번호 10-2025-0167871호 참조)

또한, 판단 이전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의 무결성, 절차의 일관성,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 간의 대응 관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판단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출원인의 출원번호 10-2025-0186552호 참조)

종래 기술에 따르면, 입력 데이터의 고정, 절차의 강제,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



간 대응 관계의 고정 및 사후 변경 차단과 같은 조건 집합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판단 이전 단계에서 입력과 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출원인의 출원번호 10-2025-0192119호 참조)

그러나, 상기와 같은 조건 집합만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판단 결과에 대한 누락 탐지, 이상 패턴 식별, 반복 오류 분석이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기존 요소와 사실 데이터 간 매핑의 품질이나 정합성 계산의 편향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판단 결과 간 비교, 통계적 경향 분석 및 구조적 문제의 누적 식별이 불가능하여, 동일한 구조적 결함이 반복되더라도 판단 구조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은 사건이나 판단을 분석·발전시키는 구조라기보다는, 기계적인 검증 또는 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에 머무르게 된다.

현존하는 기술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재현성과 적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엄격한 재현성을 보장하나 환경 변화에 경직되어 진화하지 못하며, 기계학습 시스템은 데이터에 적응하여 진화하나 결정의 재현성과 설명 가능성을 희생한다. 본 발명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아키텍처 수준에서 분리하고 통합함으로써, 동일 시스템 내에서 확정적 판단 실행 영역과 확률적 구조 진화 영역이 병행하여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조건 집합에 따른 판단 전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판단 구조를 단계적으로 진화시켰다. 제1단계에서는 기준 요소의 구조화, 사실 데이터의 정



렬, 기준과 사실 간 매핑 및 정합성 계산을 통해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기본 판단 구조를 확립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판단 결과의 신뢰도, 일관성 및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판단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판단 결과와 판단 과정에서 생성된 매핑 정보 및 정합성 계산 결과를 입력 데이터로 누적하고, 반복 패턴 또는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판단 구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 진화는 단순히 조건을 충족하는 판단 수행을 넘어, 판단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고 구조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판단 체계를 형성하며, 이후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단 구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판단을 수행하면서도,
누적된 판단 입력과 판단 결과의 검증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 구조 자체를 자동으로 조정 및 진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또한, 입력 데이터의 무결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판단 구조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과제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판단 방법 및 시스템은,

재현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제약 조건 집합 하에서 기준 요소의 구조화, 사실 데이터의 정렬,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의 매핑 및 정합성 계산을 통해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제1 판단 실행 단계 및 시스템; 및

상기 제약 조건 집합과 분리된 진화 경로에서, 누적된 판단 이력 및 검증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판단 구조를 구성하는 기준 요소 간의 가중치, 적응 순서 또는 결합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자동으로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판단 구조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를 수행하는 제2 진화 실행 단계 및 시스템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아키텍처적 분리에 의한 이점 확보: 제약 조건 집합(불변 영역)과 진화 경로(가변 영역)를 분리함으로써, 개별 판단 사례의 무결성/재현성과 시스템 전체의 적응적 개선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신뢰성 계층화: 확정적인 판단 실행 계층은 법적 효력이나 감사 추적이 필요한 판단의 기반이 되고, 진화 계층은 해당 판단 구조의 장기적 성능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계층적으로 관리한다.
- 판단 구조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단순 학습을 넘어 판단 구조 자체의 자동 조정 및 진화가 가능하다.
- 입력 데이터의 무결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판단 및 수행이 가능



하다.

- 판단 결과의 재현 가능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된다.
- 누적된 판단 이력을 반영한 적응적 판단이 가능하다.
- 판단 구조의 변경 전후를 비교·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이 향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의 전체 흐름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는 판단 구조의 단계적 진화 개념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용어 및 데이터 구조

1) 입력 데이터 (10)

입력 데이터는 사건, 행정, 심사, 기술 검증, AI 판단 등의 대상이 되는 원자료로서, 문서, 기록, 추정, 증거, 로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입력 데이터는 텍스트, 표, 첨부파일, 링크, 전자문서 식별값, 시간 정보, 작성자 또는 생성 주체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기준 요소 (20)

기준 요소는 판단에 적용되는 규범, 기준, 평가 항목, 요구 조건, 절차 요건, 도메인 규칙, 체크 항목 등을 의미한다. 기준 요소는 복수 개로 구성되며, 각 기준 요소는 식별자, 정의, 적용 조건, 입력 요구 형태, 허용 값 범위, 가중치, 우선순위,



결합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3) 사실 데이터 (30)

사실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에서 추출·정렬된 사건 사실, 절차 사실, 증거 사실, 시간축 사실, 상태값 등을 의미한다. 사실 데이터는 식별자, 출처, 생성 시각, 신뢰도, 원문 참조, 증거 링크, 상태값을 포함할 수 있다.

4) 매핑 (40)

매핑은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를 1:1, 1:N, N:1, N:N 방식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매핑은 매핑 규칙, 대응 근거, 매핑 강도(점수), 충돌 여부, 결손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5) 정합성 계산 (50)

정합성 계산은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기준 충족 여부, 불충족 여부, 충돌 여부, 결손 여부를 산출하는 계산을 의미한다. 정합성은 이진값, 다중값, 점수값, 등급값으로 구현될 수 있다.

6) 판단 결과 (60)

판단 결과는 정합성 계산 및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출력으로서, 판단 상태, 근거 링크, 계산값, 설명 요소, 로그를 포함한다.



7) 판단 구조 (70)

판단 구조는 제1 판단 실행 단계/모듈에서 사용되는 기준 요소 집합, 사실 데이터 정렬 규칙, 매핑 규칙, 정합성 계산 규칙 및 결합 규칙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제2 진화 실행 단계/모듈에 의해 버전 관리되는 핵심 대상이다.

8) 입력 데이터 (80)

입력 데이터는 판단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을 시간 순으로 누적한 것으로서, 입력 버전, 기준 버전, 매핑 결과, 정합성 값, 평가 값, 구조 검증 결과, 구조 재구성 전후 상태, 변경 사유(계산 근거), 적용된 모델 또는 규칙 식별자를 포함한다.

9) 제약 조건 집합 (90)

제약 조건 집합은 재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제약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며, 이 영역을 ‘불변 영역(Immutable Domain)’ 이라 한다.

- (1) 입력 데이터 고정: 입력 데이터의 확정 버전을 생성하고, 해당 버전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여 이후 단계에서 원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절차 강제: 단계 간 전이 조건을 정의하고, 선행 단계 완료 없이는 후행 단계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대응 관계 고정: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의 대응 관계(매핑)의 생성·수정 권



한을 제한하거나, 승인된 방식으로만 생성되도록 한다.

(4) 사후 변경 차단: 판단 결과가 생성된 이후 입력·기준·매핑·정합성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규 버전으로만 생성하도록 한다.

10) 진화 경로 (100)

진화 경로는 제약 조건 집합과 분리되어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하며, ‘가변 영역(Mutable Domain)’ 또는 ‘메타-판단 영역 (Meta-Judgement Domain)’ 이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실험적 분석과 개선이 허용되며, 그 결과는 승인 절차를 거쳐 향후 불변 영역의 판단 실행에 새로운 기준으로 반영된다.

2. 시스템 구성(예시)

본 발명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고, 시스템으로도 구현될 수 있다. 시스템 구현의 경우, 예를 들면 다음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1. 제1 판단 모듈:

- 입력 수집부: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며, 파일 업로드, API 연계, 데이터베이스 조회, 전자문서 ID 참조 방식 중 적어도 하나로 입력을 확보한다.
- 입력 고정부: 입력 데이터의 확정 버전을 생성하고, 확정 버전에 대한 해시를 생성하며, 확정 버전의 저장소를 잠금 처리한다. 확정 버전 식별자, 생성 시각, 생성 주체를 함께 저장한다.



- 기준 요소 구조화부: 판단 대상 도메인에 대응하는 기준 요소를 구성하고, 각 기준 요소의 정의, 적용 조건, 가중치, 우선순위, 결합 규칙을 구조화한다. 기준 요소는 버전으로 관리되며, 기준 버전 식별자와 생성 시각이 함께 저장된다.
- 사실 데이터 정렬부: 입력 데이터에서 사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시간축 또는 사건 흐름에 맞추어 정렬한다. 사실 데이터는 출처와 원문 참조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 매핑 및 정합성 계산부: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 간 매핑을 생성하고,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정합성을 계산한다. 정합성은 기준별 충족 여부, 결손 여부, 충돌 여부를 포함하도록 계산한다.
- 판단 결과 생성부: 정합성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한다. 판단 결과에는 계산값, 근거 링크, 기준 버전, 입력 버전이 포함된다.
- 판단 결과 평가부: 매핑 결과와 정합성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도, 일관성, 기여도를 계산하고, 판단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 이력 누적부: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를 이력 데이터로 누적 저장한다. 저장은 시간 순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산출물은 상호 참조 ID를 포함한다.

2. 제2 진화 모듈:

- 구조 검증부: 이력 누적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 패턴(예: 동일 결손 반복) 또는 오류 패턴(예: 특정 유형 충돌 반복)을 분석하여 판단 구조의 안정



성 및 신뢰성 문제를 식별한다.

- 판단 구조 자동 조정 및 진화부 (구조 재구성부): 구조 검증부의 분석 결과 및 판단 결과 평가부의 평가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기준 요소 간 가중치 조정, 적용 순서 변경, 결합 관계 재설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판단 구조를 재구성한다. 재구성 결과는 신규 구조 버전으로 저장된다.
- 경로 분리 제어부: 본 발명의 핵심 아키텍처 원리를 구현하는 모듈로서, 제1 판단 모듈의 데이터 흐름과 제2 진화 모듈의 데이터 흐름이 물리적(별도 서버, 저장소) 또는 논리적(가상화, 네임스페이스, 엄격한 권한 제어)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제어한다. 이를 통해 가변 영역의 모든 실험적 변경사항이 불변 영역의 확정된 판단 이력이나 원본 입력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분리된 진화 경로에서 생성된 신규 판단 구조는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 다음 주기의 제1 판단 모듈에 안전하게 적용된다.

3. 단계별 처리 절차 - 전체 아키텍처 개요 및 실행 사이클

본 발명의 처리 절차는 제1 판단 실행 사이클과 제2 진화 실행 사이클로 크게 구분되며, 이 두 사이클은 경로 분리 제어부에 의해 관리되는 별도의 영역에서 운영된다.

- 제1 판단 실행 사이클: 특정 사건(입력 데이터)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제약 조건 집합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이 과정의 모든 산출물은 잠금 및 버전 관리되어 사후 변경되지 않는다.



- 제2 진화 실행 사이클: 다수의 판단 이력이 누적된 후, 배치(batch) 또는 주기적으로 트리거되어 판단 구조 자체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메타-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1 사이클의 확정된 이력 데이터를 ‘읽기 전용’ 으로 참조만 할 뿐, 해당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다.

4. 제1 판단 실행 사이클

1) 입력 등록 및 문서화

- 입력 수집: 사용자는 사건 또는 판단 대상의 입력 데이터를 제출한다. 입력 데이터는 원문 텍스트, 첨부 파일, 전자문서 식별자, 다른 시스템 API 응답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 입력 정규화: 입력 데이터의 문자 인코딩, 줄바꿈, 시간 형식, 파일명 규칙을 통일한다. 중복 첨부, 손상 파일, 형식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 리스트를 생성한다.
- 입력 확정 버전 생성: 입력 데이터에 대한 확정 버전 V0를 생성한다. V0에 대한 해시값 H0를 생성하고 저장한다. V0는 이후 변경이 불가하도록 잠금 상태로 저장한다.
- 입력 메타데이터 저장: 입력 버전 ID, 해시, 생성 시각, 생성 주체, 원문 출처를 저장한다. 이후 모든 판단 산출물은 입력 버전 ID를 참조하도록 한다.

2) 기준 요소 구조화

- 기준 세트 선택: 판단 도메인에 따라 기준 세트 K를 선택한다. 기준 세트는 버



전으로 관리되며, K의 버전 ID를 확정한다.

- 기준 요소의 형식화: 각 기준 요소 k_i 는 기준 ID, 기준 정의(문장 또는 규격), 적용 조건, 입력 요구 형태(필수 사실, 선택 사실, 허용 증거 유형), 산출 형식(이진, 점수, 등급 등), 기본 가중치 w_{i0} , 우선순위 p_{i0} , 결합 규칙(AND, OR, 가중합, 최소 충족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구조화한다.
- 기준 요소 간 관계 정의: 상호 배타 기준, 상호 보완 기준, 계층 기준을 구분한다. 결합 관계 그래프 또는 테이블로 저장한다.

3) 사실 데이터 추출 및 정렬

- 사실 후보 추출: 입력 버전 V0에서 사실 후보를 추출한다. 추출은 규칙 기반 파서, 텍스트 분할, 메타데이터 키 추출, 지정 양식 필드 추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다.
- 사실 정규화: 사실 후보를 표준 필드 집합(예: 사실 ID, 사실 내용, 시간, 주체, 객체, 행위, 위치, 증거 참조)으로 정규화한다. 시간 정보는 표준 시간축으로 변환한다.
- 사실 정렬: 시간 정보가 있는 사실은 시간 순으로 정렬한다. 시간 정보가 없거나 부분적인 경우, 사건 흐름 규칙 또는 도메인 절차 규칙에 따라 순서를 부여한다. 충돌 사실(동일 항목의 상이한 값)은 충돌 플래그로 표시하고, 원문 근거를 각각 연결한다.



4) 매핑 생성

- 매핑 후보 생성: 각 기준 요소 k_i 에 대하여, 관련 가능성이 있는 사실 데이터 f_j 후보군을 생성한다. 후보군 생성은 키워드 매칭, 필드 타입 매칭, 시간 구간 매칭, 주체·행위·객체 매칭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다.
- 매핑 점수 산정: 매핑 강도 점수 $s(k_i, f_j)$ 를 계산한다. 점수는 근거 링크의 존재, 사실의 신뢰도, 시간 일치, 타입 일치를 가중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매핑 확정: 기준별로 최고 점수 또는 임계치 이상 후보를 선택하여 매핑을 확정한다. 복수 매핑이 필요한 기준 요소는 N 개까지 매핑을 허용하고, 허용 N 은 기준 정의에 의해 결정한다. 매핑 결손(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은 결손 상태로 기록한다.
- 매핑 고정: 확정된 매핑 결과는 매핑 버전 M_0 로 저장한다. M_0 는 이력 데이터로 기록되며, 판단 수행 단계에서 참조된다.

5) 정합성 계산 및 판단 결과 생성

- 기준별 정합성 계산: 각 기준 요소 k_i 에 대하여, 매핑된 사실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합성 값을 산출한다. 정합성 값은 충족/불충족/결손/충돌, 점수(0~1 또는 0~100), 등급(A~D) 중 하나로 구현될 수 있다.
- 결합 정합성 계산: 기준 요소 간 결합 규칙에 따라 상위 정합성 또는 전체 정합성을 계산한다. 결합 계산 시 결손과 충돌은 별도 규칙으로 처리하며, 결손이 치명 항목이면 전체 판단을 유보하거나 불충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판단 결과 생성: 기준별 정합성, 결합 정합성을 포함하는 판단 결과 R0를 생성한다. R0에는 입력 버전 ID, 기준 버전 ID, 매핑 버전 ID, 계산 로그, 근거 링크를 포함한다.

6) 판단 결과 평가

- 신뢰도 평가: 기준별 매핑 점수, 사실 신뢰도, 충돌 빈도, 결손 항목 수 등을 이용하여 신뢰도 값을 산출한다.
- 일관성 평가: 동일 주체 · 동일 시간대의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지 검출한다.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일관성 저하 플래그와 근거 링크를 저장한다.
- 기여도 평가: 각 기준 요소가 최종 판단에 기여한 정도를 산출한다. 기여도는 기준 가중치, 정합성 변화량, 결합 규칙에서의 영향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유효성 평가: 신뢰도, 일관성, 기여도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유효성은 승인, 조건부 승인, 재검토, 유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이력 누적 및 구조 검증

- 이력 데이터 누적: 입력 버전, 기준 버전, 매핑 버전, 정합성 값, 판단 결과, 평가 결과를 이력 데이터로 저장한다. 저장은 시간 순으로 누적되며, 모든 산출물은 상호 참조 ID를 포함한다.
- 반복 패턴 분석: 유사 입력에서 동일한 결손이 반복되는지, 특정 기준에서 불충족이 반복되는지 분석한다. 반복 패턴은 기준 요소 ID 단위로 집계한다.



- 오류 패턴 분석: 충돌 사실이 특정 유형에서 반복되는지 분석한다. 매핑 실패가 특정 데이터 형식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 구조 안정성 검증: 기준 요소 간 결합 규칙이 특정 케이스에서 일관되게 실패하는지 검증한다. 특정 기준 요소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판단을 지배하는지 검증한다.

5. 제2 진화 실행 사이클: 판단 구조 자동 조정 및 진화

본 단계는 제1 판단 실행 사이클과 분리된 진화 경로(가변 영역)에서 실행된다. 즉, 본 단계의 모든 연산은 별도의 계산 환경에서 수행되며, 그 입력은 제1 사이클에서 생성된 확정된 이력 데이터의 복사본 또는 참조이다.

- 입력 집합 구성: 진화 입력은 누적 판단 이력, 평가 결과, 구조 검증 결과로 구성한다. 진화 입력은 원 입력 데이터 V0를 수정하지 않으며, V0의 참조 ID만 이용한다.
- 진화 대상 파라미터 정의: 기준 요소 간 가중치 집합 W, 기준 요소 적용 순서 집합 P, 기준 요소 결합 관계 집합 C를 정의한다.
- 가중치 조정: 기준 요소의 상대적 기여도, 오류 빈도, 결손 빈도, 충돌 영향도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재산정한다. 예를 들어, 오류가 빈번한 기준은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은 입력 요구 형태를 재분류하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다. 산출된 가중치 W1은 신규 구조 버전의 일부로 저장한다.
- 적용 순서 변경: 결손이 높은 기준을 우선 평가하도록 순서를 변경하거나, 충돌 해결이 필요한 기준을 선행 단계로 이동시킬 수 있다. 순서 변경은 절차 강제 조건



집합의 절차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구조 내부의 계산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현한다. 산출된 순서 P1은 신규 구조 버전의 일부로 저장한다.

- 결합 관계 재설정: 결합 규칙의 실패 패턴을 분석하여 AND, OR, 가중합, 최소 충족 조건 등을 재설정한다. 결합 관계는 기준 요소 간 그래프 구조로 저장되며, 변경 전후를 비교 가능하도록 버전 관리한다. 산출된 결합 관계 C1은 신규 구조 버전의 일부로 저장한다.

- 신규 판단 구조 생성: 신규 판단 구조 S1은 기준 버전 K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K의 파라미터 집합 (W1, P1, C1)을 포함하는 별도 구조 버전으로 생성될 수 있다. 또는 기준 요소의 버전 자체를 K1로 생성하되, 기존 K0는 유지하고 신규 버전 K1을 추가 생성한다.

- 경로 분리 유지: 진화 과정은 입력 고정, 절차 강제, 대응 관계 고정, 사후 변경 차단 조건 집합과 분리된 경로에서 수행된다. 진화 결과는 신규 구조 버전으로만 반영되며, 기존 판단 결과의 입력과 산출물은 변경되지 않는다.

- 적응 및 검증: 신규 구조 버전을 적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 입력에 대한 판단을 재수행하고, 이전 결과와 비교한다. 비교 결과는 구조 진화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력 데이터로 저장한다.

6. 불변 영역과 가변 영역의 관계

본 발명에서 제약 조건 집합(입력 고정, 절차 강제, 대응 관계 고정, 사후 변경 차단)은 불변 영역(Immutable Domain)을 정의하며, 모든 개별 판단 실행의 토대이다.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는 가변 영역(Mutable Domain)에서 수행된다. 두 영역은 경로 분리 제어부에 의해 물리적/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데이터는 불변 영역에서 가변 영역으로의 단방향 흐름(읽기 전용 참조)을 원칙으로 한다. 가변 영역에서 생성된 개선안(신규 판단 구조 버전)은 승인 절차 후, 향후 불변 영역의 판단 실행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아키텍처는 "실행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 과 "시스템의 진화성과 지속적 개선" 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법률, 행정,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7. 구현 형태

- 방법 구현: 상기 제1 판단 실행 사이클 및 제2 진화 실행 사이클에 기재된 단계들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 시스템 구현: 상기 단계들은 제1 판단 모듈, 제2 진화 모듈 및 경로 분리 제어부를 포함하는 복수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각 모듈은 서버, 컨테이너, 가상 머신 또는 관리형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상기 방법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어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8. 추가 실시예

- 다중 도메인 적용: 서로 다른 도메인별 기준 세트를 병렬로 적용한 뒤, 도메인



별 판단 결과를 결합 판단으로 합성할 수 있다.

- 누락 및 충돌의 처리: 결손 또는 충돌이 기준 요소 정의에서 치명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 판단 결과를 유보하고 추가 입력 요구를 생성할 수 있다. 추가 입력 요구는 신규 입력 버전으로 등록되며, 기존 입력 버전을 변경하지 않는다.
- 구조 변경 이력의 저장: 구조 변경 전후의 가중치, 순서, 결합 관계는 버전 차이로 기록되며, 변경 원인을 기여도, 오류 빈도, 결손 빈도, 충돌 영향도로 연결 저장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기준과 사실의 구조화 및 매핑에 따른 판단 구조를 전제로 하여 판단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판단 이력 및 검증 결과에 따라 판단 구조 자체를 자동으로 조정 및 진화시키고, 그 과정이 제약 조건 집합(불변 영역)과 분리된 진화 경로(가변 영역)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재현성, 무결성, 적응성 및 설명 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이 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부호의 설명】

10: 입력 데이터



20: 기준 요소

30: 사실 데이터

40: 매핑

50: 정합성 계산

60: 판단 결과

70: 판단 구조

80: 이력 데이터

90: 제약 조건 집합

100: 진화 경로



【청구범위】

【청구항 1】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기준 요소를 구조화하는 단계;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상기 기준 요소에 대응되는 사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
상기 기준 요소와 상기 사실 데이터를 매핑하는 단계;
상기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정합성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정합성 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청구항 2】

복수의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 간의 매핑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 결과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고도화 방법에 있어서,
기준 요소와 사실 데이터의 대응 관계에 따라 복수의 매핑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매핑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 결과의 신뢰도, 일관성 또는 기여도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고도화 방법.

【청구항 3】

판단 결과 및 판단 과정에서 생성된 매핑 정보와 정합성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
구조를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구조 검증 방법에 있어서,



판단 결과, 매핑 정보 및 정합성 계산 결과를 입력 데이터로 누적 저장하는 단계;
상기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판단 구조 내의 반복 패턴 또는 오류 패턴을 분석하는 단계; 및
상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구조의 안정성 또는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구조 검증 방법.

【청구항 4】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에 있어서,
(a) 무결성 및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 조건 집합(입력 고정, 절차 강제, 대응 관계 고정, 사후 변경 차단) 하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기준 요소를 구조화하는 단계;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상기 기준 요소에 대응되는 사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
상기 기준 요소와 상기 사실 데이터 간의 매핑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정합성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정합성 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 판단 단계; 및
(b) 상기 제약 조건 집합과 분리된 진화 경로에서,
누적된 판단 입력 및 상기 판단 결과에 대한 검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가중치, 적응 순서 및 결합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재산정함으로써 상기 판단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청구항 5】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에 있어서,

(a) 무결성 및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 조건 집합(입력 고정, 절차 강제, 대응 관계 고정, 사후 변경 차단) 하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기준 요소를 구조화하는 단계;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상기 기준 요소에 대응되는 사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

상기 기준 요소와 상기 사실 데이터 간의 매핑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정합성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정합성 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 판단 단계; 및

(b) 상기 제약 조건 집합과 분리된 진화 경로에서,

누적된 판단 이력 및 상기 판단 결과에 대한 검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가중치, 적응 순서 및 결합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재산정함으로써 상기 판단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제2단계에 있어서,

누적된 판단 이력 및 판단 결과에 대한 검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누적된 판단 이력에서 식별된 반복 오류 패턴 또는 결손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판단 구조를 조정하는 단계; 또는

상기 기준 요소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 오류 빈도, 결손 빈도 및 충돌 영향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가중치를 재산정하는 단계; 또는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결합 규칙의 실패 패턴을 분석하여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결합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의 결과 생성된 신규 판단 구조는 별도의 구조 버전으로 관리되며, 후속 판단 수행 시 상기 신규 판단 구조가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청구항 7】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에 있어서, 무결성 및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 조건 집합(입력 고정, 절차 강제, 대응 관계 고정, 사후 변경 차단) 하에서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제1 판단 모듈; 및 상기 제약 조건 집합과 분리된 진화 경로에서, 상기 제1 판단 모듈에 의해 누적된 판단 이력 및 검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판단 모듈의 판단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제2 진화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판단 모듈은,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기준 요소를 구조화하는 기준 요소 구조화부;

상기 입력 데이터로부터 상기 기준 요소에 대응되는 사실 데이터를 정렬하는 사실



데이터 정렬부;

상기 기준 요소와 상기 사실 데이터 간의 매핑을 생성하고 상기 매핑 결과에 기초하여 정합성을 계산하는 매핑 및 정합성 계산부;

상기 정합성 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판단 결과 생성부;

상기 판단 결과의 신뢰도, 일관성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판단 결과 평가부; 및

상기 판단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이력 데이터로 누적 저장하는 이력 누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모듈은,

상기 이력 누적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 패턴 또는 오류 패턴을 분석하는 구조 검증부; 및

상기 분석 결과 및 상기 판단 결과 평가부의 평가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준 요소 간의 가중치, 적용 순서 및 결합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재산정하여 신규 판단 구조를 생성하는 구조 재구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제1 판단 모듈의 수행 경로와 상기 제2 진화 모듈의 수행 경로가 상기 제약



조건 집합에 의해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제어하는 경로 분리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



【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재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제약 조건 집합 하의 판단 실행 영역(불변 영역) 과, 누적된 판단 이력을 기반으로 판단 구조 자체를 자동 조정하는 진화 영역(가변 영역) 을 아키텍처 수준에서 분리·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분리된 이중 구조를 통해, 본 발명은 단일 시스템 내에서 개별 판단의 확정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과 시스템 전반의 적응적 진화와 지속적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여,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설명 가능하고 책임 있는 AI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 1】

불변 판단 전제 구조 입력 데이터 고정 · 절차 강제 · 대응 관계 고정 · 사후 변경 차단
판단 수행 영역 기준 구조화 → 사실 정렬 → 매핑 → 정합성 계산 → 판단 결과 생성
판단 결과 평가 영역 신뢰도 평가 · 일관성 평가 · 기여도 평가
이력 누적 및 구조 검증 영역 판단 이력 누적 · 반복 패턴 분석 · 오류 패턴 분석
분리된 경로에서 수행
판단 구조 자동 조정 및 진화 영역 가중치 조정 · 적용 순서 변경 · 결합 관계 재설정

【도 2】

1단계 판단 구조 기준 구조화 · 사실 정렬 · 매핑 · 정합성 계산
2단계 판단 고도화 신뢰도 · 일관성 · 기여도 평가
3단계 구조 검증 이력 누적 · 반복 패턴 분석 · 오류 패턴 분석
4단계 구조 진화 가중치 조정 · 적용 순서 변경 · 결합 관계 재설정



서울 행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0018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 사원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 소속 변호사인데, 2021. 9. 29. 피고에게 이른바 리걸테

크(Legal Tech) 회사¹⁾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사원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겸직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유]

원고가 '사원'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회사는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 사건 플랫폼)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C'가 운영중인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법률문서를 선택 및 비용 계산 후 단계별 물음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법률문서가 생성되면서 서면이 작성되어지는 체계로서,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고, 피고의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각 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법률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작성된 법률 문서를 이 사건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로부터 첨삭, 자문 또는 직인을 받는 변호사 검토·직인서비스(이하 '이 사건 검토서비스'라 한다), 법률 문서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전자서명 서비스'라 하고, 이 사건 검토서비스와 합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으로 칭한다) 등이 있다.

2)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문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고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의사록, 동의서, 정관, 약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이 사건 플랫폼에서는 유형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원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구현 모습은,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문서를 선택하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표준화된 대상 문서가 생성되고, 여기에는 곳곳에 공란이 있는데 이 사건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이용자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문장 모듈이 해당 공란을 채워 특정한 계약 조항 내지 법률 문장이 완성되어 이용자가 선택한 문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4) 이 사건 검토서비스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법률문서 또는 이 사건 플랫폼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변호사와 소통하며 변호사가 해당 문서를 검토·수정하고 변호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내용의

서비스인데, 이는 '기본 250,000원', '긴급 검토 320,000원'으로 구분하여 유료로 제공된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원고는 2019. 5.경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며 변호사 비용 또는 법무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9. 4.경부터 이를 유료로 제공하였는데, 2019. 5. 최초 제정된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⑩ 유료서비스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법률문서자동작성 프로그램, 변호사 검색, 스타트업 진단솔루션 등 각종 리컬테크 기반 프로그램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검색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
3. 블로그형 서비스
4. 법률문서자동작성, 변호사검색 등 스마트컨트랙트 시스템 등 리컬테크 기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6)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데 대하여, D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E가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5. E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였고,²⁾ 2021. 3.경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작성된 문서는 3일간 무료로 제공 및 보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7)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플랫폼에 관한 이용약관은 2022. 11. 28.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⑩ 유료서비스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문서 시스템의 열람, 편집, 인쇄, 다운로드, 사본생성 등의 이용 및 위 서비스들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문서 보관을 위한 C 드라이브 전자서명, 이행관리 등 회사가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를 의미한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문서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자가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한 입력 및 선택으로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
2. 변호사검토·직인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작성을 마친 법률문서 또는 이용자가 회사 제공의 시스템에 업로드한 법률문서를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가입한 변호사 회원에게 검토 및 변호사 명의의 직인 날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자서명 서비스: 자동작성 또는 회원이 업로드한 법률문서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는 검색, 게시판형, 블로그형, 이행관리 서비스, 리걸테크 기반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 내지 제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1분기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이를 반영한 이용약관이 2022. 11. 28.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 개정일 이후부터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8)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로 인하여 생성된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찍혀있고 워터마크 삭제, 편집, 인쇄, 다운로드, 사본 생성, 이메일 전송, 장기보관, 문서 공유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 플랫폼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이하 'C 포인트'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C 드라이브 미니'(연 10,800포인트), '베이직'(연 60,000포인트), '프로'(연 120,000포인트), '비즈니스'(연 600,000포인트)로 구분하여 포인트를 충전·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C 포인트를 통해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미니	베이직	프로	마스터
문서 관리					
관리 문서 수	①	1건	50건	무제한	무제한
편집기	①	✓	✓	✓	✓
열람/편집	①	✓	✓	✓	✓
문서 인쇄	①	5건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문서 다운로드	①	5건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사본 생성	①	-	-	200건	무제한
이메일 전송	①	-	-	200건	무제한
워터마크	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 이용요금 테이블]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이용자 대신에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검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검직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와 같은 리걸테크 산업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할 사업인 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피고의 검직허가 기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

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① (가)목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② (나)목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③ (다)목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④ (라)목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⑤ (마)목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8조에서는 회원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 제8조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기타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5호),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동업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6호) 등에 해당하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이 부분의 궁극적인 쟁점은, 주식회사로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행위로서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은 금지되는 법률 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인 이 사건 회사의 행위는 프로그래밍 작업의 수행,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입력에 따른 프로그래밍 적용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문서는 크게 기업법률에 관계된 문서, 생활법률에 관계된 문서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고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의사록, 동의서, 정관, 약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적어도 앞서 본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내지 '그 밖의 법률사무의 처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대상사안이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

라) 만일 어떠한 플랫폼이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위대법원 판시 법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마)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구현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플랫폼은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하여 그에 따른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용자가 채울 수 있는 공란을 배치하며, 해당 유형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문장 모듈이 해당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문서가 작성된다. 이와 같

이 이용자가 답변한 내용은 문서의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서로 조합된다[유형별로 표준화된 문서 공란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령, 이름을 입력하는 공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된다)를 이용자가 입력하였을 때에도 생성되는 문서에는 그대로 입력된다].

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문서는 사전에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사건 회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축적된 가정적인 사례를 기초로 하여 표준화된 문서를 만들고, 해당 공란을 채우는 작업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사) 또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래밍이 이용자의 개별적 사례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구현되지도 않았다.

3)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범위의 한계

비록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그 구현 모습이 사전에 이미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이는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여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그러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종류가 다수라고 하여 그 본질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다) 어떠한 시스템이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되어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를 내포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지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해당 시스템이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혹은 이러한 과정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AI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시스템에서 적합성 검토 및 수정 권고 등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법률 서식집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플랫폼이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검토·수정하거나 알고리즘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일 알고리즘을 통한 검토·수정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어떠한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이 생성형 AI 기술(이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을 적용한 것이라면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에 대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연관된 법률 관계 문서를 선택·작성하여 준다면, 이는 문서 양식의 단순한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서서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³⁾

마. 이 사건 검토서비스가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위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것이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검토서비스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대상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유료 서비스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플랫폼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C 포인트를 구매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게 우선 귀속되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고 이를 다운로드, 인쇄하기 위하여는 C 포인트를 구매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생성된 문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최근 변호사법 제34조 제6항에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법률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법률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법률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도된 바 있으나, 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생성형 법률문서를 작성, 검토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조항이 되고, 이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에 비해 훨씬 넓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한 문서 작성 화면에는 '전자서명하기', '변호사 검토 요청'과 같은 유료 서비스에 관한 배너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 문서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검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대가 전액은 이 사건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에 관한 원고의 행위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계의 성립·유지·변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알선'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2. 4.경 사례 중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약 35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유치하였고(을 제4, 7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투자로 보인다.

3)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는 내용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단지 변호사법 제 34조 및 제109조 제1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 알선 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하여 사전에 구현된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로서,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검토서비스의 제공은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유료 서비스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을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38조(겸직 제한)

-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끝.

○ 기본내용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0018	사건명	[전자]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박OO	피고	서OOOOOOOO
재판부	제 8 부(나)		
접수일	2023.03.29	종국결과	2025.02.18 원고승
원고소가	50,000,000원	피고소가	0원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피고	상소일	2025.03.10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25.02.25	확정일	2026.02.13

○ 심급내용

법원	사건번호	결과
대법원	<u>2025두35483</u>	2026.02.1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u>2025누6423</u>	2025.09.25 항소기각

○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대법,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아냐" 원심 확정...서울변회 패소

한민아 기자 | 승인 2026.03.19 16:14



로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의 작업을 도와줄 뿐 구체적인 법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사법연수원 30기)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이하 서울변회)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서울변회 측 상고를 기각했다(2025두35483). 이에 따라 서울변회가 박 센터장에게 한 겸직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변호사인 박 센터장은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Legal Tech) 회사인 '로폼' 사원 겸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로폼'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로폼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23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변회를 상대로 한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변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3구합60018**).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전에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는 형태로, 이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계약서처럼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서울변회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아 기자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2. 5. 26.

주 문

1.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등 60명은 변호사들이고(이하 '청구인 변호사들'이라 한다),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 서비스를 출시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는 2021. 5. 3. 열린 202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를 금지하는 내용,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佣가를 표방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무료 또는 부당한佣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변호사등의 광고·소개·홍보, 그 밖에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소개·홍보 등에 관하여 그 방법이나 내용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협 규정 제44호, 2021.5. 3.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4조 제12호, 제13호,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규정은 2021. 5. 4.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21. 8.5.효력이 발생하였다.

2.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8조 제1항 단서는 변호사등의 광고 방법·내용 등의 제한·규제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12호, 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5. 3. 전부개정된 것)

제3조[광고의 주체] ② 변호사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非)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이하 "타인"이라 한다)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광고내용 등의 제한]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2.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13.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14.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및 지방회의 회칙이나 규정(이하 "회규")에 위반되거나,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경제적 대가(알선료,중개료,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5.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8조[법률상담 광고] ① 변호사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이익(알선료,중개료,수수료, 회비,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2010. 2.8. 개정된 것)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 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5. 3.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소개·홍보, 그 밖에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광고·소개·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변호사등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등에 관한 소개·홍보, 변호사등이 수행하는 일체의 직무에 관한 소개·홍보, 그 밖의 소비자와 변호사등을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부칙(2021.5. 3. 전부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 변호사들의 행복추구권,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이를 일탈하여 온라인 플랫폼 광고 방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고, 법률의 위임조항 없이 곧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와 제8조 제1항 중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योग'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중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3)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위반

변협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으로 광고업자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의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도모'를 들고 있는바, 형식적인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위 규정들은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 아니고, 부당한 행위를 특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금지를 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반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이 위 공익보다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법률서비스 온라인 광고 플랫폼 상에 상당한 유·무형의 투자를 지속하여 왔고(신뢰이익), 변호사법상 광고 관련 조항의 연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으며, 이 사건 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 입장에서 청구인 변호사들과 다른 직역 종사자사이, △△ 서비스 이용 변호사와 다른 법률서비스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사이에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 다른 직역 광고업자와 법률서비스 광고업자 사이, 전통 광고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광고업자 사이, 청구인 회사와 기타 플랫폼 광고업자 사이에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상 경제질서 위배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서비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 자유경제질서를 위반한 위헌적 규정이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2)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사항을 정한 것인바, 비록 그 제정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된다(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참조).

(3) 그렇다면, 변협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9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협 및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의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서 정한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권법률인 변호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인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자기관련성

(1)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1.10. 25. 2010헌마661: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2) 청구인 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지만, 수범자인 변호사의 상대방으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등의 광고·홍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광고방법,내용 등의 제약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등과 거래하는 위와 같은 사업자의 광고 수주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당 부문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개정목적은 살펴보다라도 가장 주요한 것이 청구인 회사가 운영하는 △△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변협은 이 사건 규정 개정을 전후하여 그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회사의 영업의 자유 내지 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 연혁

(1) 변협은 1993. 6. 28.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변협 규정 제44호)을 제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광고방법과 횟수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변호사법에는 광고에 관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23조), 위 조항은 종래의 변협 규정과 같이 변호사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제1항) 변협이 정하는 광고방식과 내용 등을 제한하는(제2항) 이른바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변협도 2001. 7. 9. 광고사항을 13개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 및 광고비 총액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는 등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였다.

(3) 그 후 구 변호사법(2007. 1. 26. 법률 제8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변협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07. 1. 26. 법률 제8271호로 개정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변협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일부 문구만이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 법률 개정에 따라 변협도 2007.2. 5. '기존의 규제 위주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광고를 널리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을 전부개정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업무광고 기준'도 제정하였다.

(4) 이후 변협은 2016. 6. 27. 인터넷, 휴대폰, 이메일 등 광고방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변호사 업무광고의 형태,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광고의 방법 및 내용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전부개정하였고, 종래 세부기준이었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업무광고 기준'을 폐지하면서 위 규정에서 함께 규율하였다.

(5) 이 사건 규정은 종래의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2016. 12. 30. 개정되고, 2021. 5. 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고규정'이라 한다)을 2021. 5. 3. 개정한 것인데,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는, ① 특정 광고방법 등 제한의 폐지(제5조 제1항 관련), ② '전문' 표시 사용의 허용(제7조 제1항 관련), ③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수임행위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 등 광고행위에 대한 변호사 참여 규율(제5조 제2항 관련) 및 수임료 덤핑행위 등 불공정 수임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제4조 관련) 등이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참조). 한편 헌법 제15조는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는바,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하게 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헌재 2015. 12. 23. 2012헌마685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변협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등이 광고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청구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5조, 변협회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제90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 회사는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변호사등의 광고·홍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2) 청구인 변호사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가지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7. 8. 30. 2006헌바96 참조).

(3) 청구인 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 서비스를 기존과 같이 운영하지 못하는 영업상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6. 25. 2013헌마198 참조).

(4) 청구인들은, 그들과 다른 직역 종사자 사이에 규제의 차이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역 종사자와 청구인들을 그 직무의 내용 및 성질, 목적 또는 사명, 자격요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2.11. 29. 2010헌바454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상 △△ 서비스 이용 변호사와 다른 법률서비스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 변호사사이는 물론, 전통 광고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광고업자 사이, 청구인 회사와 기타 플랫폼 광고업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 제119조에 관한 주장 역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6)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자치규범에 특정 규율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

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헌재 2012. 4. 24. 2010헌바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3조 제4항의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 변호사법 제23조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등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제1항),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제2항),국회가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한할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변협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그 범위를 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변호사법은 위 사항을 변협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한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의 한계 이탈 여부

청구인들은 수권법률인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광고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금지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모법이 정한 위임한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하에서도 필요한 경우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권을 받아 제정된 하위규범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위임 범위 내일 것을 요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수권법률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변협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위임을 받아 광고의 주체(제3조 제2항), 광고내용(제4조), 광고방법(제5조), 법률상담 광고(제8조)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내용들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그 의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위임 범위 내로서 명확한 규정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및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4호는 변호사등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제4호는 변호사등이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목적 또는 수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단순히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무엇인지는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이 사건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 '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은 변협의 회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역의 회규를 살펴봐도 '유권해석'이라는 표현 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제3항),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협에 위임하고 있는바(제4항), 변협은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제17조 제3항에서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의 광고 내용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례가 없거나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변협 협회장은 변협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의 '협회의 유권해석'을 전자의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해석이라고 보든, 후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 회신이라고 보든, 위 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등은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범자들은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금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규정은 그 수범자가 특정 광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규율임에도, 스스로 그 내용을 파악하여 광고 행위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변협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특정 사안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변협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수범자가 하고자 하

는 광고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미리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규율 내용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1) '참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고 '협조'는 '힘을 보태어 도움'으로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기관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참여 또는 협조'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7.8.31. 2016헌가11 참조).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등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광고·소개·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금지되는 광고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2항 중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또한 위 각 호와 연관 지어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는 위 조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형태의 행위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들로서는 위 규정이 그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위 제5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행위 또한 그 수권조항인 변호사법 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수권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위 조항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부분 및 제8조 제1항의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부분

1)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는 변호사등이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본문은 변호사등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경우 등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법 제27조에서는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각 호에서는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제1호),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제2호),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제3호) 등을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익목적 수임'의 예로 들고 있으며, 변협 자체적으로도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규정 제54호)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 '공익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의 수권법률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도 위 표지와 같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되어 금지된 광고, 특히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3호),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제4호), 다른 변호사들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제5호) 등이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변호사법의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1호는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견적,입찰, 비교 등을 표방하는 광고'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제8호의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나 제9호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일례가 될 수 있다.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앞서 본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위임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부분 및 제8조 제1항의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규정은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

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영업 과정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심판대상조항별 검토

(가)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3호

1)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은 '변호사등이 광고에 자기가 아닌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타인의 상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2호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3호는 '변호사등이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변호사등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광고에 타인의 상호 또는 그 영업이나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수임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가권력은 물론 일반 사인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34조 제3항 후단),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제34조 제4항),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제34조 제5항)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 제2호는, 변호사가 법률사무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에 변호사가 이용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호

등이 광고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조항들로 인한 제한은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바62 참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시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그와 같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르는 수임 기회의 제한이고,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는 청구인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의 제한이다. 그러나 청구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제한하는 방식을 제외한 여러 광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도 앞서 본 동업 금지 등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결국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 제8조 제1항 본문

1) 수단의 적합성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료 또는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고, 전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내지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는바,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와 소비자 피해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법률상담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참조),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로서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수임료나 법

률상담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의 경력,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시간, 소비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나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전에 무료 또는 부당한 여가를 표방함으로써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변호사법에서 허용하는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정들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료나 법률상담료를 받지 아니한다는 광고가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3, 변협이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여가의 수임료를 표방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여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무료 또는 부당한 여가의 수임료를 표방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여가의 법률상담방식을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무고한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수임료나 법률상담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제외하고도 청구인들에게는 다양한 방법과 내용의 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과 위 조항들로 인한 제한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3호, 제5조 제2항 제3호

1) 수단의 적합성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위 규정들은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3호), 소비자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제4호)를 금지

하고 있고, 구 광고규정과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3호에서 공히 '승소율, 석방률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승소율이나 석방률이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특정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처분이나 판결의 결과 역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특정한 내용의 광고만을 금지하는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은 위 규정들로 달성하려는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 유지, 소비자 피해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 제8조 제2항 제2호

1)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적이익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 등의 알선 행위에 터 잡은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위 규정들은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의 피해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변호사법 제34조 제3항)가 모두 금지되며, 위 각 조항의 위반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와 같은 변호사법 규정들은 여러 헌법재판소 선례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헌재 2007. 8. 30. 2006헌바96: 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3. 2. 28. 2012헌바62: 헌재 2018.7.26. 2018헌바112: 헌재 2021. 4. 29. 2020헌마783 등 참조).

위 규정들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규정 형식이 유사하나, '특정한' 변호사라는 표지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행위태양인 '연결(連結)'의 사전적 의미(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함)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양자 간에 위임 계약 등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알선'의 의미(헌재 2013. 2. 28. 2012헌바6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 위 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바,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위 규정들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 피해방지는 매우 중대한 데 반해,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의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1) 위 규정의 해석

위 규정(이하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라 한다)의 규율 대상은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등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규정 형식이 유사하지만 문언상 '특정

한' 변호사라는 표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금지되는 광고의 매체나 방법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제23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109조 제2호). 여기서 '소개·알선'이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참조),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법의 규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규제대상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실질을 갖춘 광고행위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규제하는 행위는 광고·홍보·소개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을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특정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광고·홍보·소개행위의 목적이 소비자를 설득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 말하는 '소개·알선·유인'이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예정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법이 이미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광고·홍보·소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수단의 적합성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러한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앞서 본 입법목적인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3) 침해의 최소성

일반적으로 광고는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허위 혹은 기만적인 것이 아닌 한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개인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에 가장 좋은 수단은 의사소통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열어 놓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서도 변호사등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등이 광고업체에게 경제적 대가인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 역시 변호사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그러한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타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이 변호사법에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되는 알선 행위와 맞닿아 있음에 반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광고업체를 통한 유상 광고 방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고, 변호사광고의 목적 자체가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받거나 유인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의 경제적 대가성이나 사건 알선 목적 등은 위 규정의 적용 한계를 설정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는 변호사광고를 통하여 생활영역 안에서 가장 쉽게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어떤 변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많다.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에 의한 소비자의 현혹 현상이나 변호사업 전반에 대한 품위나 신용의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존재하므로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인 분쟁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변호사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는 새로운 변호사들이 광고

업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변호사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정보전달매체에 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고의 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인터넷과 같이 계속 변화하는 분야에서의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하는 점(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헌재 2019. 11. 28. 2016헌마90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업체를 통한 광고방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그 입법목적은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즉,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의 각 호와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5조 등에서 이미 변호사 업무 광고의 내용상, 방법상의 제한을 설정하고 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며(제3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2호). 이러한 법규들에 의하여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규제하고자 하는 부당한 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나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공익도 중요하나 위 규정으로 그러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반면, 변호사법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입법 연혁과 같이 변호사 업무 광고의 자유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 사회·경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위 규정은 전면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변호사들은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고, 청구인 회사로서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

1) 수단의 적합성

위 규정은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는 '비변호사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앞서 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개입이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참조).

(2)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여부

(가) 구 변호사업무광고규정(변협 규정 제44호, 2007. 2. 5. 전부개정되고, 2016. 6. 27.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2007년 광고규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된 이래 제3조 제1항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광고의 주체를 명시한 이후, 구 광고규정부터 이 사건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이는 변호사법 제34조의 명의이용 허락 금지와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등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상호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타인의 홍보를 금지하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들(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3호)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일반적인 수임료 광고는 특별히 금지되었던 바 없으나 수권법률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한 입법목적인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임료 광고(제4조 제12호)에 관한 신뢰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에 관한 광고(제4조 제13호, 제5조 제2항 제3호)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개정과관계없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던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조항들(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5호, 제8조 제2항 제2호)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관련된 것들로서 신뢰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다만 구 2007년 광고규정은 제8조 제1항을 신설하여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구 광고규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변호사등이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급속하게 무너뜨리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결국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청구인 변호사들이 이 사건 규정 개정 전에 무료 또는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 회사의 경우 '△△' 서비스 내의 법률상담은 변호사들과 소비자 사이에 직접 유료로 이루어지며, 그 금액이나 내역 등에 대하여는 전혀 개입하

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으로서는,청구인들의 무료 또는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에 대한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및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청구인 회사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한 보충의견,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이선애,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대가 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청구인 회사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 단체인 변협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변호사등'만이 수범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등의 광고·소개·홍보, 그 밖에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광고·소개·홍보 등에 관하여 그 방법·내용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함에 따라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청구인 회사로서는 위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변호사등이 선택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의 불리한 경제적 영향에 불과하다(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청구인 회사의 불이익은 간접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8.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정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유권해석 광고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

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충한다.

가.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서 '협회의 유권해석'은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4항의 일반적·추상적 법령 해석 또는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3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의 회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협회의 유권해석'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금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 어떠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라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질의한 본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존의 유권해석이 과연 수범자가 하고자 하는 광고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금지하는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앞서 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서의 '협회의 유권해석'은 그것이 내려진 뒤라고 하더라도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유권해석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및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

더욱이 변협이 선제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경우 이에 반하는 광고 행위는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협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 등에 따라 독자적인 변호사 징계사유가 되는데,징계사유의 전제가 되는 유권해석의 정당성에 대한 당부심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변협에게 변호사법, 이 사건 규정 등 광고 관련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해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수범자들이 유권해석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다만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간접적으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징계혐의자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도 유권해석 자체의 당부에 대한 심사보다는, 변협이 선취한 유권해석이 정당한 규범임을 전제로 하여 징계사유의 존부로서 징계혐의자의 광고 행위가 그러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유권해석의 존부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배제 가능성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 위 규정들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는 점, 유권해석 자체에 대한 사후 심사가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현행 법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여 규제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협 회칙 제57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회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규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공백을 변협의 유권해석이라는 불명확한 수단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분명한 데 반해, 이로 인하여 청구인 변호사들은 그 자체로 예측하기 어려운 협회의 유권해석을 살펴 광고 행위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고, 청구인 회사로서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함에 있어 그것이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영업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9.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기능과 의미

(1)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같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정한 광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금지하는 한편, 제7호에서 위와 같은 광고 이외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변협이 정하여 금지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광고의 범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과 함께 세부적인 변호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협은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있어 위와 같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변협이 '광고의 방법 등'을 제한한 것으로, 비록 그 제정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니더라도,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기능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 등이 '①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②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이하 '사건 등'이라 한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③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이하 '광고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건의 소개 등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고하는 상대방에 대한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와 결탁하거나 이를 유인·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대가 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이 광고 등을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상대방은 위 (1)항에서 살핀 ① 내지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①과 ②의 요건은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③의 요건과는 별도의 독립된 요건에 해당한다.

먼저, ① '경제적 대가의 수수'라는 요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경제적 대가의 예시로 '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를 들면서 그 수수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알선료, 중개료, 수수료는 단순히 광고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건 등의 당사자와 변호사 등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 등은 원칙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고, 통상 광고는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제작되며 비용이 소요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변호사광고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의 경제적 대가는 '사건 등에 관한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의 '경제적 대가'는 위 규정으로 인하여 광고 등의 의뢰가 금지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광고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요건이다.

다음으로 ②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한 목적'에 관하여 본다. 법정의견은 변호사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고, 변호사광고의 목적 자체가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로서,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도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등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의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넘어 사건 등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개·알선·유인이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하여, 광고는 그 개념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예컨대,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가 광고행위만을 할 뿐 이후의 위임계약의 주선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와 광고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에게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는 등으로 광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전단계로써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경우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변호사에게 소비자가 유입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의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위 규정으로 인하여 광고 등의 의뢰가 금지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단순 광고행위의 개념

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법정의견은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문언상 '특정한' 변호사라는 표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금지되는 광고의 매체나 방법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위 규정이 변호사 등에 대하여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과는 금지의무의 주체와 금지대상이 상이하여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해석에 직접 참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비록 '특정한'이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변호사를 전제로 한다. 또한 '특정한'이란 '특별히 정하여져 있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표지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반드시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특정한' 변호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에 대하여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조문의 제목 자체도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등이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등의 광고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이에 결부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이 광고의뢰 등을 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한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목적성에 경제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 의뢰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와 결탁하거나 이를 유인·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특성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비변호사의 알선행위를 금지·처벌하고(제109조 제1호, 제2호, 제34조 제1항), 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며(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을 금지·처벌한다(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그런데 변호사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한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성에 경제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위 변호사법 조항들에 기하여 소개·알선·유인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알선행위의 규제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보전달의 매체에 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고의 방법 및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효과에 그치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대가수수 금지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등의 광고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이에 결부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이 광고의뢰 등을 하는 것에 한정하여 금지할 뿐이므로, 변호사 등이 사건 등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 없이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아가, 변협은 그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일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직종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직업인 단체로서 자율성과 자치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규제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 수임질서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 해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알선·유인·소개'의 목적을 가지는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 의뢰 등만을 금지하는바,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의 피해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 ~ 61.주식회사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성지윤, 김준태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고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그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람상조는 유리합니다. ……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고 광고(이하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라 한다)하고, 중앙일간지에 14차례에 걸쳐 ‘아무나 믿고 맡길 수 없는 장례문제 - 대한민국 1등 상조이기에 안심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뒤이어 ‘상조보증가입’ 사실을 선전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궁극적으로 갑 회사 등이 폐업한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조서

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인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공2010하, 1627)

원고, 피상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

원고, 피상고인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시정명령과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는 2007. 6. 1.부터 2009. 4. 2.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희 보람은 한국상조보증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매월 납입하시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한국상조보증에 담보로 위탁되어 있으며,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회원님께서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으시게 됩니다”는 내용 및 “보람은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상조보증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인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납입하신 소중한 월부금 중 일부는 매월 상조보증공제회에 담보로 위탁되고 있으며, 회원님들께서는 회사의 존폐와 전혀 관계없이 행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광고(이하 ‘이 사건 폐업 후 행사제공 광고’라고 한다)한 사실, ② 원고들이 가입한 한국상조보증 주식회사의 위탁금 납입규정과 상조보증 주식회사의 위탁금 업무규정은 원고들이 영업정지로 상조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휴업·폐업·해산·파산할 경우 원고들이 위탁·공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들이 상조보증회사들에게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9억 원 내지 41억 5,400만 원으로서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총액의 2.0% 내지 4.4%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이 사건 폐업 후 행사제공 광고는 상조보증회사들이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도,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궁극적으로 위 원고가 폐업하더라도 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전부 보증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07. 6. 1.부터 2009. 4. 2.까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람상조는 유리합니다. ……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라고 한다)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8. 11. 25.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14차례에 걸쳐 “아무나 믿고 맡길 수 없는 장례문제 - 대한민국 1등 상조이기에 안심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뒤이어 ‘상조보증 가입’ 사실을 선전한 사실, ③ 또한, 원고들은 광고책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보람그룹 계열사들을 열거하면서 “부금사업의 제1의 요소는 안전성입니다. 상조업 보증단체인 ‘상조보증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 이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한국상조보증 주식회사’에 매월 일정금액을 위탁금으로 납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원고들이 폐업한 후에도 회원에게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장해 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원고들이 보증에 가입하여 그 보증업체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일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로서는 원고들이 폐업한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원고들은 중앙일간지 광고나 광고책자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상조보증에 가입되어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홍보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광고 등을 함께 접한 일반 소비자로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편 상조보증회사들이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 원고들이 폐업한 경우 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전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궁극적으로 원고들이 폐업한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럼 사실과 다른 인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상조보증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원고들의 폐업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하여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시정명령과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제정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와 같이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일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제2항에서 회사가 회원에게 선납일로부터 1년 이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선납할인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표준약관 제7조는 회사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용의 범위나 징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그 제8조는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표준약관 제7조가 규정한 일정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면서 원고들이 회원 가입 후 그 각 기간 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을 추가비용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8조에서 표준약관 제8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약관 제7조 및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회원 가입 후 1년 내에 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추가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비용의 범위에 회원에게 지급한 선납할인금 상당의 액수를 포함시키되 그에 관한 내용을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이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을 누리지 못

하도록 한 이 사건 약관 제8조 내지 표준약관 제8조와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이 표준약관 제6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선납할인금 반환에 관하여 추가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약관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두면서 ‘표준약관 준수’라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2항은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과 같이 회원의 이사 등의 사정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실비의 출장비용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 사건 약관에 새로 규정한 것으로서 추가비용 발생 원인제공자인 회원에게 실비의 출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2항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실비 출장비용 부담에 관하여 추가로 규정하면서 ‘표준약관 준수’라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이 회원이 계약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그 회원의 해약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목적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적 계약관계를 통하여 달성할 의도로 표준약관에 삽입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4항이 이를 수정하여 계약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회원의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날까지는 일반 회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날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배려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한 것은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이나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4항은 회원이 계약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해약을 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환급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이 일반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상조회사와 일반 회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상조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일반 회원과의 형평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계약 이후 기초수급자가 된 회원을 우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약관은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약관의 규정 취지를 따르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표준약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나머지 이 사건 약관 규정들은 그 지적과 달리 모두 표준약관의 규정 취지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4항을 두면서 ‘표준약관 준수’라고 광고한 것은 세부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4항이 계약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표준약관의 그것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약관 준수’라는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제17조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의 직원이 행사장 도착 후 상조서비스가 취소되는 것을 요건으로 소정의 출동비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표준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성격과 징수 출동비 액수에 비추어 회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이 표준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관 제17조를 추가로 규정하면서 ‘표준약관 준수’라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시정명령과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